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55호서식] <개정 2021. 12. 31.>

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(total.comwel.or.kr)에서도 신청(신고)할 수 있습니다.

[ ]일반사업 [ ]건설업 등
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

(앞쪽)

*접수번호	*접수일	처리기간 5일

해외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	

신청인 (사업주)		
	국내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	
	상호(법인명)	
	소재지	전화번호
	대표자	

해외파견자 보험관계 변경사항	구 분	변경전	변경후
	성명		
	주민등록번호		
	해외파견사업장의 명칭		
	해외파견사업장의 소재지		
	해외파견기간		
	업무내용		
	보수지급방법		
	성명		
	주민등록번호		
	해외파견사업장의 명칭		
	해외파견사업장의 소재지		
	해외파견기간		
	업무내용		
	보수지급방법		

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보험가입자) (서명 또는 인)

[ ]보험사무대행기관 (서명 또는 인)

근로복지공단 ○○지역본부(지사)장 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유의사항

1. 해외파견자의 보수총액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(별지 제22호의2서식)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(건설공사제외).
2. 해외파견사업장의 파견국가 및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이 해외파견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작성방법

1. '신청인(사업주)'란에는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한 국내 사업장의 보험관리번호 및 그 명세를 적습니다.
2. 해외파견사업장의 명칭/ 소재지의 변경은 승인된 해외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거나, 사업장소재지가 이전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.